

부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1년 1월 14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)

□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9932호, 2010. 1. 18. 공포, 2010. 3. 19. 시행)되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지고,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2230호, 2010. 6. 29. 공포, 2010. 9. 1. 시행)되어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“경기도 부천교육청교육장”을 “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음.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효행장려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.</p>	<p>○ 연도별 시행계획은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나,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효행장려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민법」에서 정하고 있는”을 “「민법」 제777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, 문학, 미술, 음악, 연극, 영화,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”을 “효문화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기도 부천교육청교육장”을 “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센터운영을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